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목 차>

1.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작 성 자	이름	김동규
	담당부서 (과)	특수교육정책과		직급	교육연구사
	국장	김천홍		연락처	044-203-6560
	과장	진창원		이메일	kdk8352@mail. go.kr

2024. 11. 25.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김천홍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											
	2.규제조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3.위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7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1.29~2025.01.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특성 및 요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생활적응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활동 신설에 대한 현장의 요구 지속 ○ 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자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이 시행 중(’ 24.3.1.시행)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22.12.22.) ** 실생활 중심 교육활동인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및 생활적응’으로 구성 ○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해당 법령 사항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활동’ 운영 및 결과 기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7.규제내용	특수학교(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이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일상생활 활동 신설에 따라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을 기재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특수학교</td><td>196개</td></tr><tr><td>이해관계자</td><td>시도교육청</td><td>17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수학교	196개	이해관계자	시도교육청	17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수학교	196개											
이해관계자	시도교육청	17개											
9.규제목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에 실시한 ‘일상생활 활동 상황’ 결과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 활동 결과 기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정확한 안내를 통해 체계적 관리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해당없음											

	(정성분석)			
기타	12. 규제일물제	대분류	소분류	
		일물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물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물설정여부	일물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물유형	일물설정기간	일물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u>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특성 및 요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생활적응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신설에 대한 현장의 요구 지속
- 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자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이 시행 중('24.3.1.시행)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22.12.22.)

** 실생활 중심 교육활동인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및 생활적응’으로 구성

- 따라서 **현행 법령을 신설하여 국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상생활 활동’ 운영 및 결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 반영을 통해 법령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에 실시한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를 기재하도록 규정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해 삶과 연계된 생활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이에, **법령(시행령 제21조제2항), 국가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관련 정책의 일관성 있는 정비**를 통해 **일상생활 활동 상황 기재**에 대해 학교 현장에 **정확한 안내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24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

업무 담당자	담당자 협의회 (‘24.4~7.)	시행하고 있는 일상생활 활동 상황에 대한 학 교 생활 기록 부 기재를 위한 조속한 개정 추진 요청	시행규칙 개정 추진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교과별)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2022 개정 특수 교육 교육과정 에 대한 전반적 의견 제시, 교육 과정 현장 안착 을 위한 지원 요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특수학교(급) 교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관련 전문가 협의회	2022 개정 특수 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일상 생활 활동 상황에 대한 학교생활기 록부 기재를 위 한 조속한 개정 추진 요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	입법예고 (‘24.11.~12.)		

3. 규제목표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에 실시한 ‘일상생활 활동 상황’ 결과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 활동 결과 기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정확한 안내를 통해 체계적 관리 가능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특수학교에서 '일상생활 활동' 편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본 규제 수단은 비례적 타당성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24.3.1.시행)에 따라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 2학년이 운영되고 있어, 본 규제 사항에 근거한 행정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24.3.1.시행)」에 따라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 2학년이 운영되고 있어, 추가 재정부담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본 규제 사항은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 실시한 '일상생활 활동' 결과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일상생활 활동 결과 기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령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